

수원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5645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헌

피고1. B

2. C

3. D

4. E

변론 종결2021. 2. 17.

판결 선고2021. 3. 31.

주 문

1. 가. 피고 B와 F(G생)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44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4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C, D와 F(G생)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44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취소한다.

나. 피고 C, D는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4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E와 F(G생)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E는 F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H은 피고 E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1954년부터 1968년까지 사이에 자녀로 F와 피고 B, C, D을 낳았다.
- H은 1964. 11.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2. 2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F는 2016. 3. 21. I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8. 7. 13., 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 H이 2017. 1. 29.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E가 3/11, 자녀인 F와 피고 B, C, D이 각 2/11씩 공동상속 하였다.
- F와 피고들은 2017. 10. 10. 이 사건 토지 중 2/4를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1/4을 피고 C, D이 공동상속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E가 단독으로 상속함으로써 그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F는 H의 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않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협의에 따라 2017. 10. 11.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중 2/4 지분, 피고 C, D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가 2017. 10.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협의에 따라 F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44 지분을, 피고 C,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44 지분을, 피고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11 지분을 각 양도하였다.

○ I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F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12. 19.경 F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원고는 F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2019차전26143호)하였고, 2019. 3. 18. 'F는 원고에게 13,949,012원 및 그중 8,818,985원에 대하여 201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2019. 4. 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① 피고 B, E: 갑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C,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협의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44 지분을, 피고 C,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44 지분을, 피고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11 지분을 각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F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F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 B와 F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4/4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와 F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2/4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와 F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각 2017. 10. 10. 체결된 각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F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4/4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2/4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F가 피고 B로부터 2003. 1. 16.부터 2018. 10. 17.까지 합계 4,63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F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 B에게 넘기기로 하여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피고 B에게 양도한 것인데, 그 당시 피고 B는 F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곽용현

별지